

# 행정규칙 정비과제 건의사항

부서	행정규칙명	건의내용	개정사유
건설안전과	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	<p>제 21조(안전점검의 실시시기)</p> <p>[현행]</p> <p>2. 정기안전점검: 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. 다만,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, 기간,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[개정안]</p> <p>2. <b>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,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 안전점검 대가 건설공사의 규모, 기간,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</b></p>	<p>(1) 최근들어 발주자가 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부실벌점을 주겠다고 하면서 무리한 점검 횟수를 요구하고 있음. 예) 고속도로 교량에 교각이 20개인 경우 20개 모두의 기초, 하부점검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음.</p> <p>(2)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동 조항 1항에서와 같이 시공자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마치 발주자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음.</p>
		<p>제 48조(발파·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)</p> <p>[현행]</p> <p>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발파·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 계상은 별표 7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, 보수,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토목·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.</p> <p>[개정안]</p> <p>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파·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 계상은 별표 7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<b>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주변 건축물, 관정 등 시설물의 사전조사 비용, 소음·진동 측정비용, 양육가축 조사 비용과</b>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, 보수,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토목·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.</p>	<p>(1) 현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가 제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인접한 건축물과 양육가축 소유자에 인한 민원과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이나 예방적 안전에 대한 구체적 비용이 명확하게 계상되어 있지 않고 설계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안전관리가 부실화 될 우려가 있음.</p> <p>(2) 발파, 소음·진동, 지반침하에 따른 사전보강, 보수, 임시이전 등의 대상, 피해규모, 공사비 산정과 법적책임과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조사 비용이 반영 되어야함.</p> <p>(3) 장기적으로 「산업안전보건관리비」와 같이 대가요율에 의한 비용 계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</p>

부서	행정규칙명	건의내용	개정사유
건설안전과		<p>[별표 7]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</p> <p>3. 발파·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</p> <p>가.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관매달기 공사 비용</li> <li>2)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</li> <li>3)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</li> <li>4)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</li> </ol> <p>※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.</p> <p>나. 발파·진동·소음과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공사장 주변 지역 사전조사 비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건축물, 토목시설물, 관정 등 시설물의 사전조사 비용</li> <li>2) 발파 등에 따른 공사장 진동·소음 측정 비용</li> <li>3) 양육가축 조사비용</li> </ol> <p>다. 발파·진동·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,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</li> <li>2)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, 보수,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</li> <li>3) 암파쇄방호시설(계획절토고가 10m이상인 구간) 설치,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</li> <li>4) 임시방호시설(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) 설치,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</li> </ol> <p>※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.</p> <p>라. 지하수 침하,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,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</li> <li>2)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, 보수,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</li> <li>3)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</li> </ol> <p>※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.</p> <p>마.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</p>	

부서	행정규칙명	건의내용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
시설안전과	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.	<p>제 14조(안전점검 등 실시자의 자격)  [현행] ① 안전점검 등의 책임기술자는 영 별표 5에 따른 기술 자격자로서 규칙 제 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제 84 조의 해당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</p> <p>[개정] ① 위 동일  영제 9조 (책임기술자의 자격 [별표 5]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30 392 1173 1769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자격요건</th> </tr> <tr> <th>기술자격 요건</th> <th>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정기 안전 점검</td> <td>가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, 건축 또는 안전관리(건설안전)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 기술자 이상일 것 나. 건축사 삭제</td> <td>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(토목, 건축 분야로 구분)의 정기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</td> </tr> <tr> <td>2.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</td> <td>가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, 건축 또는 안전관리(건설안전)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 기술자 이상일 것 나. 건축사 삭제</td> <td>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(토목, 건축 분야로 구분)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</td> </tr> <tr> <td>3. 정밀안전진단</td> <td>가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 기술자일 것 나. 건축사 삭제</td> <td>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(교량 및 터널, 수리, 항만, 건축 분야로 구분)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(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) 이 2년이상일 것. 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</td> </tr> <tr> <td>4. 성능평가</td> <td colspan="2">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(교량 및 터널, 수리, 항만,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)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  1.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을 준용한다.  2. 건축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,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.  3. “건축사”란 「건축사법」 제 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. 삭제  4.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.</p>	구분	자격요건		기술자격 요건	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	1. 정기 안전 점검	가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, 건축 또는 안전관리(건설안전)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 기술자 이상일 것 나. 건축사 삭제	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(토목, 건축 분야로 구분)의 정기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	2.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	가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, 건축 또는 안전관리(건설안전)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 기술자 이상일 것 나. 건축사 삭제	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(토목, 건축 분야로 구분)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	3. 정밀안전진단	가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 기술자일 것 나. 건축사 삭제	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(교량 및 터널, 수리, 항만, 건축 분야로 구분)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(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) 이 2년이상일 것. 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	4. 성능평가	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(교량 및 터널, 수리, 항만,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)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		<p>(1)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‘시설물 안전법’) 시행령 [별표 5]의 개정</p> <p>(2)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라 경력, 학력, 자격과 직무교육이수에 따라 건설기술등급이 역량지수(ICEC)에 의하여 특급, 고급, 중급, 초급으로 분류하여 모든 공사와 용역에 적용되고 있으나 「시설물 안전법」에 의한 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점검, 정밀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요건에 건축사를 특별하게 인정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안전진단 분야에 종사하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다른 기술인들이 불리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.</p> <p>(3)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의 업역 다통으로 학교시설 등 건축시설물이 대부분인 경우의 정밀안전진단, 내진성능평가에서 「시설물 안전법」의 기술자격요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.</p>
구분	자격요건																			
	기술자격 요건	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																		
1. 정기 안전 점검	가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, 건축 또는 안전관리(건설안전)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 기술자 이상일 것 나. 건축사 삭제	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(토목, 건축 분야로 구분)의 정기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																		
2.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	가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, 건축 또는 안전관리(건설안전)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 기술자 이상일 것 나. 건축사 삭제	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(토목, 건축 분야로 구분)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																		
3. 정밀안전진단	가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 기술자일 것 나. 건축사 삭제	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(교량 및 터널, 수리, 항만, 건축 분야로 구분)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(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) 이 2년이상일 것. 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																		
4. 성능평가	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(교량 및 터널, 수리, 항만,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)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																			